<중요> 재직증명서 및 실업인정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82호서식]

또는 근로계약서

담당자: 문의전화: 063-540-8402, 8403, 8411 팩스 0508-8230-0609

실업인정 신청서 (취업사실신고) (님 귀하)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 처리기간 : 5일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
	③주소	(전화번호:) (휴대전화:)
④지정된 출석일(실업인정일)		⑤실업인정대상기간 (최종 출석일의 다음날부터 취업 전 날까지)
⑥지급계좌	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	
⑦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	근로사실	[ ] 없음 [ ] 있음 [근로일: 소득(예정)액:]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	[ ] 없음 [ ] 있음[등록일(시작일): 사업내용:]
	신재휴업급여	[ ] 없음 [ ] 있음[재해일:]
⑧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	구직활동	일자 [ ] 업체명 [ ] 전화번호 [ ] 구직방법 [ ] 구직활동결과[ ]
	자영업	활동내용:
	취업(예정)명세	[●] 취직 [취직(예정)일: 회사명: 전화번호:] [ ] 자영업 [시작(예정)일: 사업내용:]
	구직활동 외 활동사항	내용: [ ] 직업훈련 수강 [ ] 취업확정자 [ ]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[ ] 재취업활동 없는자 [ 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 ] 사회봉사활동 참여 [ ] 재취업활동계획 수립/재검토 [ ] 집단상담 프로그램 [ ] 기타[ ]
⑨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	[ ] 구직활동[ ] [ ] 자영업준비활동 [ ] 직업훈련 수강 [ 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 ] 사회봉사활동 참여 [ ] 재취업활동계획 수립/재검토 [ ] 집단상담 프로그램[ ] [ ] 기타[ ]	

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2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익산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급자격증 1부 2. (상해)진단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면접확인서, 훈련수강증명서, 구직활동 내역서 등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 ] 실업인정일 변경 [ 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 ] 잠정실업인정 [ ]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[ 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 ]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							
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	구직급여 산출명세		지급액		
		미지급사유						
접수	접수연월일	접수번호	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·지청장	결재연월일
	. . .							. . .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